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	------	--------

〈제 1 문〉

甲은 자신의 친구 乙로부터 乙과 원한관계에 있던 丙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甲은 丙이 운전하며 출퇴근하는 모습을 수일간 관찰하여 계획을 세운 후, 사건 당일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丙의 차로부터 하차하던 사람을 丙으로 생각하고 그의 복부를 칼로 수차례 찔렀다. 그런데 실제 甲의 칼에 의해 중상을 입고 쓰러진 사람은 丙이 아닌 A였다. A가 다량의 피를 흘리면서 甲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甲은 연민의 정을 느끼고 급히 A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의사 丁에게 “A를 꼭 살려달라.”라고 부탁하고 병원을 떠났다.

A는 “수술을 하면 완쾌될 수 있지만 수술 없이 봉합만 할 경우 불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의사 丁의 설명을 듣고서 수술해 줄 것을 丁에게 요구하였다. 丁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혈을 받아야 하며 수혈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A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나, 특정 종교를 믿는 A는 “수술을 받다가 죽더라도 수혈을 받을 수는 없으니 무수혈(無輸血) 수술을 해달라.”라고 반복하여 요구하였다. 丁은 A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면서도 A의 뜻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도중 피를 많이 흘린 A는 결국 사망하였다.

1. 甲,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25점)

2. 甲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丙이 지하주차장에서 甲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하직원 A를 급히 불러 자기 대신 차에 타게 한 경우 丙 행위의 가벌성을 논하시오. (15점)

3. 丁 행위의 가벌성을 논하시오.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건축허가 담당인 공무원 甲은 丙의 신축건물 준공검사 현장실사를 나갔다가 「건축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였다. 甲은 현장에 있던 시공업자 乙에게 “위반부분을 변경하지 않으면 준공필증을 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만일 내일까지 2,000만 원을 주면 눈감아 주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乙은 건축주 丙에게 이를 알리면서 甲이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금액을 부풀려 이야기하였다.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丙은 겁을 먹고 乙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 乙은 1,000만 원을 착복하고, 나머지 2,000만 원만 甲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건축법」 위반 사실을 누락시킨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甲은, 이를 준공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과장 A의 결재를 받아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甲,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함).

(30점)

〈제2문의 2〉

甲은 다음의 방식으로 X마트에서 일주일동안 5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PC모니터, 밥솥 등을 취득하였다.

- 가. 물건 하나를 사서 계산하여 매장 밖으로 나간다.
- 나.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갈 때, 직원으로 하여금 구입한 물건에 이중계산방지용 계산완료스티커를 부착하게 한다.
- 다. 계산완료스티커를 부착한 채 다시 밖으로 나와 위의 스티커만 떼어 낸다.
- 라. 甲은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딸 乙에게 물건을 맡기고, 떼어낸 계산완료스티커만 가지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다.
- 마. 위 스티커를 동일한 물건에 붙여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다.
- 바. 취득한 물건은 乙소유의 자동차로 운반한다.

1. 甲에게 성립될 범죄와 죄수관계를 논하시오.

(10점)

2. 乙은 도주하고 甲만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할 경우, 위 자동차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